

西紀 1983年 8月 2日 制定施行
西紀 1990年 4月 30日 改定施行
西紀 1993年 6月 2日 改定施行
西紀 2000年 8月 29日 改定施行
西紀 2002年 8月 8日 改定施行
西紀 2020年 9月 17日 改定施行

賞 罰 規 定



仁川廣域市個人택시운송사업조합



목 차

제 1 장 , 총 칙

- 제 1 조 (목 적)
- 제 2 조 (적용범위)
- 제 3 조 (포상 및 징계)

제 2 장 , 상 벌 위 원 회

- 제 4 조 (상벌위원회)
- 제 5 조 (위원회 의결)
- 제 6 조 (임무)

제 3 장 , 포 상 사 항

- 제 7 조 (포상종류)
- 제 8 조 (포상대상)
- 제 9 조 (포상대상 선정)
- 제 10 조 (포상일자)

제 4 장 , 징 계 사 항

- 제 11 조 (징계의 적용)
- 제 12 조의 1 (직원의 징계사유)
- 제 12 조의 2 (조합원의 징계사유)
- 제 13 조 (징계의 종류)

제 5 장 , 이 의 신 청

- 제 14 조 (이의신청)
- 제 15 조 (징계의 재심)
- 제 16 조 (정상참작)
- 제 17 조 (제척 및 기피)
- 제 18 조 (심문과 진술)

제 6 장 , 부 칙

제 19 조 (예외결정)

제 20 조 (시행일)

제 1 장 ,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조합의 기강 및 사기양양과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하는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조합 직원 및 조합원, 임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과 조합 직원, 조합원의 징계를 이 규정에 의거 적용한다.

제 3 조 (포상 및 징계)

1.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3장 포상사항에 정한다.
2.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4장 징계사항에 정한다.

제 2 장 , 상 벌 위 원 회

제 4 조 (상벌위원회)

1. 포상 및 징계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상벌위원회 위원은 본 조합의 전 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

조합원 징계 시 전무이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.

제 5 조 (위원회의 의결)

상벌관계 처분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임 무)

상벌위원회의 임무는 상벌관계를 심의 결정한다.

제 3 장 , 포 상 사 항

제 7 조 (포상종류)

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관련부처 장관의 포상.
2. 인천광역시장의 포상.
3. 연합회장의 포상.
4. 이사장의 포상.
5. 기타 단체장의 포상.

제 8 조 (포상대상)

포상을 받을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모범조합원 및 직원.

제 9 조 (포상대상 선정)

1. 포상 대상의 선정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기타 이사장이 필요로 하는 포상 대상 선정은 이사장 및 전무이사 전결 사항으로 한다.

제 10 조 (포상일자)

조합 창립기념일 또는 총회 시 포상을 하며 기타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, 징 계 사 항

제 11 조 (징계의 적용)

징계사항은 직원 및 조합원에 해당한다.

제 12 조의 1 (직원의 징계사유)

직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준한다.

제 12 조의 2 (조합원의 징계사유)

1. 조합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자

2. 조합의 기밀문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외부에 누설한 자
3. 정관 제9조(조합원의 의무)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
4. SNS나 문자 및 유인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
5. 조합의 의결사항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SNS나 유인물을 이용하여 방해한 자
6.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및 고성으로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
7. 회의 구성원이 아닌자가 발언권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
8.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고성, 욕설, 소란행위를 한 자
(퇴장명령 3회 이상 불응시)
9. 허위사실을 작성 배포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10. 조합이 시행하는 각종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저해한 자
11.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
12. 조합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한 자
13. 조합의 이사회의, 대의원회의, 조합원총회, 선거관리업무, 일제점검등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폭력 폭언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
14. SNS를 이용 허위사실로 조합 및 임원을 비판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
15. 회의장내 폭행 및 기물파괴를 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한 자
16. 직원에게 협박, 폭행, 등의 행위를 한 자
17. 경고 2회를 받은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, 자격정지 2회를 받은자는 제명 할 수 있다.
18. 상기 9항, 10항, 11항, 12항, 13항, 14항, 15항, 16항의 위반행위로 8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징계의 종류)

1. 직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.
① 경고 ② 견책(시말서) ③ 감봉 ④ 정직(휴직) ⑤ 해고
징계위원회가 직원의 징계 사건을 의결 할 때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선의 정도, 징계 요구자의 의견,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.

2. 직원이 해고 이외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가중 적용 할 수 있다.

- ① 경고 2회 견책. ② 견책 2회 감봉. ③ 감봉 2회 정직. ④ 정직 2회 해고.

3. 조합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① 경고 : 경미한 사항으로 개정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 처분을 받은자로 한다)

② 자격정지 및 피선거권 제한 : 본 규정 제12조의 2 9항, 10항, 11항, 12항, 13항, 14항, 15항, 16항에 해당되는 자와 경고처분 2회 이상인 자로 한다.

③ 제명 : 제12조의 2 제18항에 해당하는 자와 자격정지 2회 이상인자 단, 위 ②,③호는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 장 , 이 의 신 청

제 14 조 (이의신청)

징계를 받은 자가 해당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. 단, 3심은 불허한다.

제 15 조 (징계의 재심)

1. 이사장은 징계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을 할 수 있다.
2. 재심을 청구할 시 차기 상벌위원회에서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정상참작)

징계사유에 목적, 행위, 발생동기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경감처분 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제척 및 기피)

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 18 조 (심문과 진술)

1.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증인을 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 6 장 , 부 칙

제 19 조 (예외결정)

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 또는 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.

제 20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1983년 8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3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0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